

충청북도관광진흥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

의안 번호	제 262 호
----------	---------

제출년월일 : 2000. 2. .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1. 개정이유

- '99. 6. 26 관광진흥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조문이 변경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개정하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- 과징금 처분대상(안 제4조)
 - 도지사는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 기록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.
 - 당초 :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23조제2항
 - 변경 :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40조로 개정

3. 조례개정(안) : 따로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따로붙임

5. 관련규정 : 따로붙임

충청북도관광진흥법에 의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(안)

충청북도관광진흥법에 의한과징금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중 “제23조제2항”을 “제40조”로 한다.

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(별지 제1호 서식)

납 부 통 지 서

제 호	20 년도일반회계	
납부자	주 소	
	성 명	
세입과목	(관)임시적세의수입 (항)잡수입 (목)과태료	
위반사항		
금 액		
납부기한	20 년 월 일	
납입장소		
<p>위의 금액은 관광진흥법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부과되었으니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 <p>20</p>		
		수입일부인
충청북도지사		

영수필통지서 (1)

제 호	20 년도일반회계	
납부자	주 소	
	성 명	
세입과목	(관)임시적세의수입 (항)잡수입 (목)과태료	
위반사항		
금 액		
납부기한	20 년 월 일	
<p>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.</p> <p>20</p> <p>○○은행○○지점</p> <p>충청북도징수관 귀하</p>		
		수입일부인

영수필통지서 (2)

제 호	20 년도일반회계	
납부자	주 소	
	성 명	
세입과목	(관)임시적세의수입 (항)잡수입 (목)과태료	
위반사항		
금 액		
납부기한	20 년 월 일	
<p>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.</p> <p>20</p> <p>○○은행○○지점</p> <p>충청북도금고</p>		
		수입일부인

영 수 증

제 호	20 년도일반회계	
납부자	주 소	
	성 명	
세입과목	(관)임시적세의수입 (항)잡수입 (목)과태료	
위반사항		
금 액		
납부기한	20 년 월 일	
<p>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.</p> <p>20</p> <p>○○은행○○지점</p>		
		수입일부인

(별지 제2호 서식)

과징금납부기한연장신청서		처리기간	
		7 일	
납부의무자	성명(대표자)		
	주소(회사명)		
통지번호		납 기	
납부금액			
<p>1.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</p> <p>2. 필요한 연장기간</p> <p>3. 기타 참고사항</p> <p>위와 같이 납부기한을 연장받고자 관광진흥법시행령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징수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0 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신청인 (서명 또는 날인·무인)</p> <p>충청북도지사 귀하</p>			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과징금 처분대상) 도지사 는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 기록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과징금의 부과징 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 유 지 하여야 한다.</p> <p>별지 제1호 서식</p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width: 100%; height: 100%; text-align: center; margin: 10px 0;"> <p>“붙임참조”</p> </div> <p>별지 제2호 서식</p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width: 100%; height: 100%; text-align: center; margin: 10px 0;"> <p>“붙임참조”</p> </div>	<p>제4조(과징금 처분대상) 제40조..... </p> <p>별지 제1호 서식</p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width: 100%; height: 100%; text-align: center; margin: 10px 0;"> <p>“붙임참조”</p> </div> <p>별지 제2호 서식</p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width: 100%; height: 100%; text-align: center; margin: 10px 0;"> <p>“붙임참조”</p> </div>

관 련 규 정

-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40조(행정처분기록대장의 기록·유지)
 - 영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기록대장은 별지 제32호 서식에 의한다.

[별지 제32호 서식]

행정처분기록대장

업종별	
-----	--

집행관청	
------	--

업체(또는 종사원)명	허가등록 또는 자격번호	처분사유	처분사항	처분내용	처분 자인
				처분일자	